

검 토 보 고 서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 주 시 의 회

전문위원 김형열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조례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에 의하여 주민들로 부터
양주시 의료원 설립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가 접수
되어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 조례
제정 청구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 조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본조례안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2항
에 의하여 청구주민 대표가 작성하여 제출한
조례안을 동조 제6항에 의하여 요건을 충족
할 경우 동조 제8항에 의하여 의회에 부의

하여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지방의료원은 종전에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하였으나 2005.07.1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지방의료원은 자치단체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주민들로부터 청구된 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제출되었습니다.

○ 본조례안을 조문별로 검토한 결과

- 안 제10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는데, 동법률 동조 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원장에게 위탁할수 있는 권한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원장이 의료원 운영에 관한 권한이 불분명합니다

- 본 조례안은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이라고 하였는데, 의료원 운영에 관한사항은 대체적으로 명시되었다고 할수 있으나, 설립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외에 구체적인 설립 추진에 관한사항은 내용적으로 미흡합니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17조에서 국가는 지방의료원의 시설 설비.장비 확충 및 우수 인력 확보등의 운영상의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수 있고, 설립에 대한 재원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상으로는 “양주시의료원 설립비는 국가에서 지원받을수 없고, 양주시 자체적으로 출연하여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따라서 의료원 설립의 재원에 대하여도
아울러 심의 되어야 할것입니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
의료원을 설립할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의료원 설립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른 시책적 판단에 의한 임의적 사항
이고, 본조례가 제정되었다 하여도 지방의료원
설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될 수가 없으며,
본조례는 설립할 경우에 적용 기준이라 할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